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 옴부즈만 설치〉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719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3
-----------------	---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71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1. 20.
- (3) 회 부 일 : 2024. 11.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법령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존재해 이에 대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권익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생활영역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

이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ombudsman을 둠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 관련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장애인 차별 또는 애로사항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옴부즈만’을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장애인 옴부즈만의 설치) 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둔다. ② 장애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

여 제기되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장애인 ombudsman은 장애인 정책 또는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장애인 ombudsman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ombudsman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 ombudsman”으로 본다.

⑥ 장애인 ombudsman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 등에게

<신 설>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장애인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장애인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⑨ 장애인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의견 제출 등) ① 업무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인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인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장애인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의4(행정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그 소속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7의2. (생략) <u><신설></u> 8. (생략) ③ ~ ⑤ (생략)	<u>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u> 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의2. (현행과 같음) 8. <u>제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옴부즈만의 위촉에 관한 사항</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타인의 대리인’이라는 의미로 다수의 국민들이 법률을 통한 권리보장, 인권실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구를 통해 중재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음.¹⁾

-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 옴부즈만 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산업융합 촉진법」

1) 이서영, & 김진. (2020). 일본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옴부즈맨연구-기타큐슈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74, 167-184.

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이 있음²⁾

□ 개정안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규제의 정비와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 불편, 애로사항 등의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두어 장애인의 기본권을 대변하고, 인권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관련 정책과 행정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옴부즈만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가지며, 지원을 받게 됨.

- **장애인 옴부즈만의 업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발굴 및 개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장애인관련기관에서 제기되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의 해결,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장애인 옴부즈만의 권한:** 업무처리 결과에 따른 관련 사항의 개선 권고(해당 기관은 30일 이내 이행계획 제출),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내용 공표

2)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두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한다.

- 장애인 읍부즈만에 대한 지원: 업무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 설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요청,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장애인 읍부즈만의 업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장애인관련기관에서 제기되는 차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의 해결’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 만약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³⁾(참고자료 1: 관련 법조문).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2008년~2023년), 권고 건수는 810건, 시정명령 건수는 6건, 과태료 부과건수는 0건으로 파악됨(보건복지부 제출).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개요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20100>)

□ 둘째,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옴부즈만의 업무로 ‘애로사항의 해결’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업무의 범위가 모호해지고,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행정부 소속기관이 사법부의 권한까지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옴부즈만의 일반적 규정 형태와 같이 ‘해결 방안의 권고’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정책국과의 관계 및 업무가 중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기존 부서와의 관계 확립 또는 관련 업무의 통·폐합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장애인 옴부즈만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정원 및 예산(인건비 등)이 필요한바, 직제 개정 및 예산의 확보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고려되어야 하므로, 부칙의 시행일(개정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경우는 이들의 업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5개 부서, 33명)을 두고 있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1실(20명 근무)을 두고 있음.

□ 다섯째,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옴부즈만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의 주 목적이 장애인 정책 관련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국무총리 소속 아래 있음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 내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 옴부즈만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합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 7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존재해 이에 대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옴부즈만 임명과 별도 사무기구 신설보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구제 기구 및 우리 부 장애인복지 업무 등 기존의 고유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권리구제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①정부· ②지자체· ③공공기관· ④장애인관련기관을 비롯해 ⑤교육기관·⑥의료기관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⑦사기업 및 ⑧사인간의 장애차별 등에 대해서도 시정권고가 가능하고 법무부를 통한 시정명령 및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은 우리부 장애인복지 업무부서의 고유기능으로 별도의 옴부즈만

을 두는 것이 장애인 권익증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나.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은 중앙행정기관 하부조직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8조의2제8항의 “장애인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기구를 둔다.”는 규정은 삭제 필요

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장애인 차별 관련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이며, 장애 관련 규제 개선은 모든 분야의 영역으로 보건복지부만의 소관 업무가 아니며, 장애인의 고충과 애로사항, 규제개선 건의 등은 장애인 단체 등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하거나 생활민원지원센터 등의 지원 또는 온라인 신문고 활성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더 실질적임.

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하도록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등의 조항에서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법률 간 상충 우려, 「행정

규제기본법」 제30조 및 32조 준용과 업무기관에 대한 권고, 이행계획 제출 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권한의 범위가 넓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마.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에서 겪고 있는 차별이나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ombudsman을 두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ombudsman 활동이 실효성을 갖도록 개선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강력한 법적제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관련 법조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이하생략.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하생략.